

공 고

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11. 29.

문 화 재 청 장



<행정처분 내용>

성명	자격종목 (자격번호)	처분의 내용	처분의 사유 및 근거
최기석	화공 제1409호	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취소	<처분의 사유> ○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12조 위반 -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.3.1.부터 2013.4.30.까지 (주)금강문화재(현소재지 : 전남, 법인번호 : 201411-0010394), 2013.5.1.부터 2016.5.31.까지 영산문화재연구소(현소재지 : 경남, 법인(주민)등록번호 : 720920-1*****)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함

			<p><처분의 근거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4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</p>
박일선	화공 제3465호	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취소	<p><처분의 사유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12조 위반 -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.3.22.부터 2013.2.28.까지 (주)영산(양도양수 : (주)서광(경남, 234111-0086897)), 2013.3.1.부터 2016.3.1.까지 (주)금강문화재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함</p> <p><처분의 근거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4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</p>